

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법인구분		연결 집단 계	모법인	자법인	자법인	취득자법인	
자법인구분코드							
연결법인명	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			
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	연결 과세 표준 계산	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					
		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	
		③ 연결 이월결손금					
		④ 비과세소득					
		⑤ 소득공제액					
		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 별귀속액(②-③-④-⑤)					
		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					
		⑧ 외국법인세액					
		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(⑥+⑦-⑧)					
	연결 산출 세액 및 납부 할 세액 계산	⑩ 세율					
		⑪ 연결산출세액					
		⑫ 연결세율(⑧÷⑨)					
		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					
		㉞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					
		㉟ 조정 연결산출세액					
		㊱ 결손금 조정세액					
		⑭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		
		⑮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		
		⑯ 가산세액					
		⑰ 가 감 계(⑬-⑭-⑮+⑯)					
		기납부 세액	기한내 납부	⑱ 중간예납세액			
				⑲ 특별징수납부세액			
				⑳ ()세액			
			㉑ 소 계(⑱+⑲+⑳)				
			㉒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				
			㉓ 합 계(㉑+㉒)				
		⑳ 감면분 추가납부세액					
		㉔ 차감 납부할 세액(⑰-㉓+㉔)					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양도 ㉕ 등기자산						
	차익 ㉖ 미등기자산						
	㉗ 비과세소득						
	㉘ 과세표준						
	㉙ 세율						
	㉚ 연결산출세액						
	㉛ 감면세액						
	㉜ 공제세액						
	㉝ 가산세액						
	㉞ 가 감 계(㉚-㉛-㉜+㉝)						
	㉟ 기납부세액						
	㊱ 차감 납부할 세액(㉞-㉟)						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						
	㊳ 세율						
	㊴ 산출세액						
	㊵ 가산세액						
	㊶ 이자상당액						
세액계	㊷ 납부할 세액(㊴+㊵+㊶)						
	㊸ 차감 납부할 세액 계(㉞+㊷+㊸)						
	㊹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						
	㊺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(㉞-㉗-㉘-㉙+㉚+㉛+㉜+㉝)						
	㊻ 분납할 세액						
	㊼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(㊸+㊹-㊺)						

작성 방법

1.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: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.

법인구분	모법인	자법인	취득자법인
코드	100	200	300

*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

- 자법인: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
 - 취득자법인: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
2.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~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.
3.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: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4제2항,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,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(별지 제43호의13서식)의 ②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,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.
4. ⑧ 외국법인세액란: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(별지 제43호의13서식)의 ⑦금액을 적습니다.
5.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: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⑧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.
6. ⑪ 연결산출세액란: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- 가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: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⑫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- 나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: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.
다만, 같은 조 제8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.
8. ⑮ 가산세액란: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[별지 제44호의3서식(갑)]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, 연결자법인은 ⑬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9. 기납부세액계란(㉓·㉔):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10. ㉔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을)의 ㉔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㉔ 추가납부세액 합계/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11. ㉔ 가산세액란: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[별지 제44호의3서식(갑)] ⑪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12. 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: 연결법인별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의 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. 다만,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의 ㉔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(음수인 경우 '0')에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㉔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13. ㉔ 세율란: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.
14. ㉔ 가산세액란: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[별지 제44호의3서식(갑)]의 ⑫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15. ㉔ 이자상당액란: 연결법인별로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"㉔ 이자상당액"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.
16. ㉔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란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.
- 1) 「지방세법」(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(수정신고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
 - 2) 「지방세법」(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
 - 3) 「지방세법」(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합니다)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
 - 4)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
 - 5)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
17. ㉔ 분납할 세액란: ㉔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,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